

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4-4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, (주)□□□□, (주)★★★★★★
임직원	◆◆◆
기타	

2. 조치내용

- 수사기관 통보 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, ◆◆◆
- 과징금 :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 10억원, ◆◆◆ 2,000만원
(주)□□□□ 5억 5,920만원, (주)★★★★★★ 4억 3,510만원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-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 -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는 '19.3월~10월 기간 중 총 10개 펀드(시리즈펀드 2건)의 집합투자증권 총 1,762억원을 총 381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총 2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음
 - (주)□□□□과 ★★★★★★★(주)은 운용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증권을 모집함으로써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2조, 제429조 제1항 제2호, 제430조 제1항, 제444조 제12호, 제448조, 제9조 제7항 및 제13항, 제119조 제1항 및 제8항,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